

**EU 통합동향 및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2009.10.26)**

[목차]

요약	1
I. EU 통합 동향	3
1. 리스본 조약 진행 경과/3	
2. 리스본 조약 주요 내용/4	
3. 미비준국(체코) 동향/6	
4. 시사점/8	
II.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9
# 참고 : 유럽 통합 History	11

작성 : 구미팀 안유석 과장 (sean-ahn@kotra.or.kr)

구미팀 김한나 사원 (hanna@kotra.or.kr)

감수 : 구미팀 권오석 팀장 (oskwon@kotra.or.kr)

요 약

지난 10월 2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67.1%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10월 10일 폴란드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에 서명하면서 마지막 미비준국인 체코를 제외한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체코의 경우 대표적인 反EU파 정치인인 클라우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중이나 EU 회원국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자국내 리스본조약에 대한 수용 여론으로 인해 연내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EU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의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된다.

기존의 경제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의 확대를 위한 교두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임기 2년 6개월의 EU 대통령직이 신설되어 EU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의사결정방식이 만장일치제에서 이중다수결제로 바뀌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EU가 '법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받아 UN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국제문제에 있어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문화서비스 등 통상정책이 EU연합의 독점권한으로 전환되어, EU의 경제적 통합의 응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FTA의 정식발효의 최종 운명을 의회가 쥐게 되었다. 한-EU FTA를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의 유럽의회를 상대로 한 반대 로비 강화로 FTA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배타적 권한사항(관세,서비스 등)에 대해 EU 이사회 승인으로 정식발효前 잠정발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EU FTA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I. EU 통합 동향

1. 리스본 조약 진행 경과

□ EU 미니 헌법 '리스본 조약', 내년 1월 발효 예상

- 아일랜드 국민투표(10.2)에서 리스본 조약이 통과(찬성 67.1%)되면서 EU 통합 가시화
 - 16개월 전인 '08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반대 53.4%로 부결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권 파산과 15%가 넘는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EU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형성
- 이후 폴란드의 카진스키(Kaczynski) 대통령이 비준안 서명(10.10일)
- '09년 10월 기준, EU 27개 회원국 중 26개 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된 상태로, 남은 1개국(체코)의 비준에 전세계의 관심 집중
 - 마지막 회원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달의 다음달 첫째날에 발효되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만 비준되면 내년 1월 1일 발효 가능

☞ 리스본 조약 : 정식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

유럽연합(EU)의 기능을 강화하는 '헌법조약'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된 뒤 수정안으로 제시된 '미니 헌법'으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 후 공식 서명하여 '리스본 조약'이라고 불림.

2. 리스본 조약 주요 내용

□ 정상회의 상임의장(EU 대통령직) 신설

- 그동안 EU는 27개 회원국이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번갈아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순회 의장국 제도 운영
 - 6개월마다 의장국이 교체되면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
- 선출방법은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투표에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한 가중치를 두는 '가중(加重) 다수결' 방식
 - 임기는 2년 6개월(1회 연임 가능)이며, 매년 4회 이상 개최되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EU를 대표
- 또한, 외무부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대표직 신설
 - EU의 대외관계 업무 전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의사결정 방식 : 만장일치제 → 이중다수결제 도입

- 이중다수결제(15개국 이상+회원국 인구수 65% 이상 찬성시 가결)를 도입해,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더라도 새로운 정책 시행 가능
 -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17년 전면 실시

□ EU에 '법적 인격체' 지위부여

- 그동안 법인격이 없어 EU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 가입 불가
 - '법적 인격체' 부여로 조약체결 및 UN 등 국제기구 가입 가능
 - EU의 성격이 '정치적 실체'에서 '법적 실체'로 전환

□ EU 독점 권한(Exclusive Competences) 확대

- EU는 FTA 체결시, EU의 독점 권한 사항(Exclusive Competence)에 대해서는 '잠정 발효'를 해옴
 - 잠정 발효란 정식 발효가 지나치게 지연됨을 대비한 조항으로 EU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으로 협정의 잠정 발효가 가능
 - EU는 칠레('03.2), 멕시코('00.7)와의 FTA 체결시 잠정 적용 실시
- 현행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 통상정책 중 문화·시청각 서비스, 교육·사회보장 서비스가 EU와 각 회원국의 공동 권한 사항이었으나,
 -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EU의 독점 권한 사항이 보다 확대되어 문화·시청각 서비스 등 상기 분야에 있어 잠정 발효가 가능
 -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형사조사권만이 공동 권한 사항으로 각 27개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
 - * 통상 각 회원국 모두의 비준에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소요

☞ 리스본 조약상 EU 연합과 회원국간 할당된 권한

- EU연합의 독점권한(Exclusive Competence) : EU연합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로 회원국이 EU연합으로부터 법률 제정 권리나 수행조치를 위임받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
 - 관세 연합 / 역내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쟁법 제정 / 화폐정책(유로) / 공동수산업정책 내에서 해양생물체 보존 문제 / 공동무역정책
- EU연합과 회원국 간 공동권한(Shared Competence) : EU연합과 회원국이 법률을 제정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로 회원국은

EU연합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함. 회원국은 EU연합이 권한 행사를 중단키로 결정한 분야에서 또 다시 권한을 행사함.

- 역내시장 / 리스본조약에서 정의된 양상에 대한 사회적 정책 / 경제, 사회, 영토 결속 / 해양생물체 보존문제를 제외한 농업, 수산업 문제 / 환경 / 소비자 보호 / 운송 / 범 유럽 교통망 / 에너지 / 자유, 안보, 사법 영역 / 리스본조약에서 정의된 사항의 보건 관련 공동안전문제

3. 미비준국(체코) 동향

□ 클라우스(Klaus) 대통령 비준서명에 부정적

-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클라우스 대통령의 최종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클라우스 대통령은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했으나,
- 17명의 상원의원이 리스본 조약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자(9.29) 최종서명을 헌법재판소 결정이후로 미룬다고 입장 변경
 - *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6개월이 소요되며,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발표

☞ 참고사항 : 체코 헌법에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언제까지 최종 서명을 해야 하는지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클라우스 대통령의 헤이그 국제재판소 회부, 예산 및 국외여행 통제 등 강경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

□ 정치권 반응

- 중립내각을 이끌고 있는 얀 피셔 수상은 클라우스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서명할 것으로 전망

- 前여당인 시민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前체코수상 토폴라넵도 리스본 조약 비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인식

□ EU 회원국들의 전방위적인 압박 가중으로 이달 중 가시화 전망

- 이달 말(10.29~30) 예정된 정례 EU 정상회담까지 클라우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26개 회원국의 전방위 압박 가중 전망

<참고 : 주요인사 발언>

- ☞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EU 의장국) : “체코의 비준 이전에 EU 대통령 선출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
- ☞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 “체코의 비준은 시간 문제일 뿐 참여를 확신한다”
- 10.13일 안 피셔 체코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회견에서 체코의 집행위원 지명권 박탈에 대해 언급
- ☞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 “아일랜드에서 온 긍정적 메시지는 아직 리스본 조약 비준에 동참하지 않은 EU 회원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
- ☞ 올리비에 차스텔 벨기에 유럽차관 : “리스본 조약 수행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은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에게 이제 당신만(서명하는 일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여론조사

- 클라우스 대통령의 미서명이 체코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 그렇지 않다는 37%, 모름은 19%
* 설문조사 기관인 SANEP에서 성인남녀 4,320명을 대상으로 10.1~3일 실시
- 응답자 중 63%는 EU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체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4. 시사점

- EU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경제사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동유럽 회원국들로 인해 환경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 EU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영국·프랑스·북유럽 국가들이 힘을 실으면 환경세 도입 등의 신속 추진 가능
 - 이 경우 자동차·철강·전자 등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환경세 문제가 영향을 끼칠 전망
- 예산 및 입법 분야에서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
 - 이사회와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통해 법안이 결정되는 분야가 기존 43개에서 90개로 확대

☞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이사회와 유럽의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 기관의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에서 조정토록 하며, 조정위원회를 통한 절충이 성공하면 유럽의회는 단순다수결,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입법안을 각각 통과시켜 확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

- 회원국의 이해가 걸린 대외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
 - 일례로, 올초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끊으면서 일부 EU 회원국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EU 차원의 대응이 미미했으나,
 -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해 온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II.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 EU 이사회 승인으로 잠정 발효, 의회 승인으로 정식 발효

- 지난 10월 15일 가서명한 한-EU FTA는 현재 우리 측 국무회의의 승인 및 대통령의 재가와 EU측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정식 서명
- 이후 우리 국회비준(비준후 60일 이후 효력)과 EU의 잠정발효(잠정 발효를 승인한 다음달 효력)로 실질적 발효 가능
-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EU 의회 및 EU회원국의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함.
 - 리스본 조약은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려면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 향후 절차

- 가서명(10.15) → 협정문 번역(3~4개월 소요) → 정식서명('10.1분기) → 한국 의회비준 + EU이사회 잠정발효 승인 → 잠정발효 → EU 및 회원국 의회비준 → 정식 발효

□ 긍정적 측면

- 한-EU FTA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협정의 '잠정 발효'가 가능하며, 리스본 조약 발효시 '잠정 발효' 분야가 확대됨으로 조속한 실질 발효효과의 확대 거양 가능
- 통상정책 분야에서 EU의 독점 권한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의회 비준 없이, EU 의회의 비준만으로 FTA 협정은 대부분의 절차를 마치고 정식 발효될 가능성 예측

- 외교부는 "가서명된 협정문 번역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정식 서명을 거쳐 7월 이후 발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친시장적 우파정당인 유럽국민당-유럽민주당이 EU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한-EU FTA 비준의 낙관적 전망 가능

□ 부정적 측면

- 유럽자동차협회 등이 유럽의회를 상대로 반대로비를 벌여 유럽 의회 내 논쟁이 벌어지면서 비준이 늦어질 가능성도 상존
- 그러나, 잠정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정식비준이 늦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참고 : 한-EU FTA 반대 발언>

- ☞ 유럽자동차협회(ACEA) : 10.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서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유럽의회가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 특히 관세환급에 대한 협정상의 safeguard는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
- ☞ 독일 자동차협회 회장 : “한-EU FTA로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10% 이상 높아져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
- ☞ FIAT사 사장(이탈리아) : “한-EU FTA 비준시 유럽 자동차 산업이 황폐해 질 것이며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이 중대한 위협에 처할 것”
- ☞ 마리엘 드 사르네즈 EU 의원(프랑스) : “EU 집행위는 원산지 기준, 관세 환급, 세이프 가드 조항에 대한 자동차 및 섬유업계의 우려를 감안했어야 했다”

<참고 : 유럽 통합 History>

- ▶ 1951년 4월 : 독일·프랑스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 창설
(파리조약)
- ▶ 1957년 3월 :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로마조약)
- ▶ 1967년 7월 : 유럽공동체(EC) 출범
- ▶ 1973년 1월 :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EC 가입(9개 회원국)
- ▶ 1979년 3월 : 유럽통화제도(EMS) 출범
- ▶ 1990년 6월 : 국경통제 폐지하는 쉥겐협정 체결
- ▶ 1992년 2월 : 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편(마스트리흐트 조약)
- ▶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15개 회원국)
- ▶ 1999년 1월 : 단일화폐인 유로화 출범
- ▶ 2000년 12월 : 회원국 확대를 위한 기구개혁 합의(니스조약)
- ▶ 2004년 5월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EU 가입(25개 회원국)
- ▶ 2004년 6월 : EU헌법조약 합의
- ▶ 2005년 5~6월 : 프랑스·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EU헌법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27개 회원국)
- ▶ 2007년 6월 : 정상회의에서 EU헌법조약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 초안 합의
- ▶ 2008년 6월 :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 2009년 10월 :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 승인

/끝/

Kotra Executive Brief 09-026

EU 통합 동향 및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발행인 | 조환익
편집인 | 오성근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9년 10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